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 제한 근거 마련〉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6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3.
3. 회부연월일 : 2025. 11.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을 뿐, 지역별·구간별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하여 통행속도를 달리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 밀집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에서는 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요구되며, 반대로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용이한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제한속도 기준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경찰청장이 지역 여건과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57조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u> ① <u>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② <u>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u> ③ <u>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제157조(벌칙) ----- -----

현행	개정안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u> 4. (현행과 같음)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정하고 있음.¹⁾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별 충격가속도(단위 질량 당 충격력)을 측정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인 25km/h 운행 시 충격 가속도는 11.1g으로 10km/h 운행 시 충격가속도 3.7g 보다 3배 높고, 일반자전거의 25km/h에서 운행 시 충격가속도 5.3g의 2배 수준으로 높음.²⁾

동 실험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자의 몸무게를 고려하여 60kg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레일 위에 각 기기를 거치한 후 레일을 주행

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3,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 방안” 43면~50면

하면서 기기를 고정벽에 충돌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 10km/h로 운행된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PAS)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손되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음.³⁾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속도별 충격가속도 등 실측 결과

구분	타이어크기 및 무게	충돌 속도(km/h)			
		10	15	20	25
전동킥보드	10인치, 19kg	3.7g	5.8g	8.7g	11.g
전기자전거 (스로틀)	14인치, 26kg	3.6g	3.9g	4.6g	5.0g
전기자전거 (PAS)	26인치, 21.5kg	2.9g	3.8g	4.2g	5.3g
일반 자전거	26인치, 14kg	2.4g	3.5g	4.7g	5.8g

자료: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3,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방안” 43면~50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과정에서 사망 및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람이 충돌한 사건은 약 1,000여건 이고, 사망자는 23명~26명, 부상자는 2,486명~2,684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3) 참고로, 동 보고서에서는 세부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방안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하고, 보호구역 및 자전거·보행자 전용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를 15km/h로 설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보고서 2023-03,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제고방안” 53면~60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건수	897	1,735	2,386	2,389	2,232
차대사람	304	663	1,042	1,099	1,014
차대차	487	904	1,082	1,021	987
차량단독	106	168	262	269	231
사망자수	10	19	26	24	23
부상자수	985	1,901	2,684	2,622	2,486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가해운전자 차종별·사고유형별 교통사고)

개정안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나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⁴⁾

다만, 경찰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대부분은 계기판

4)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 운전자가 운행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행 속도를 알 수 없는 구조인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구간별 제한 속도에 맞춰 기기를 제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우며, 새롭게 제정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한 법률⁵⁾에 계기판 설치 등을 규정하여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

5)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